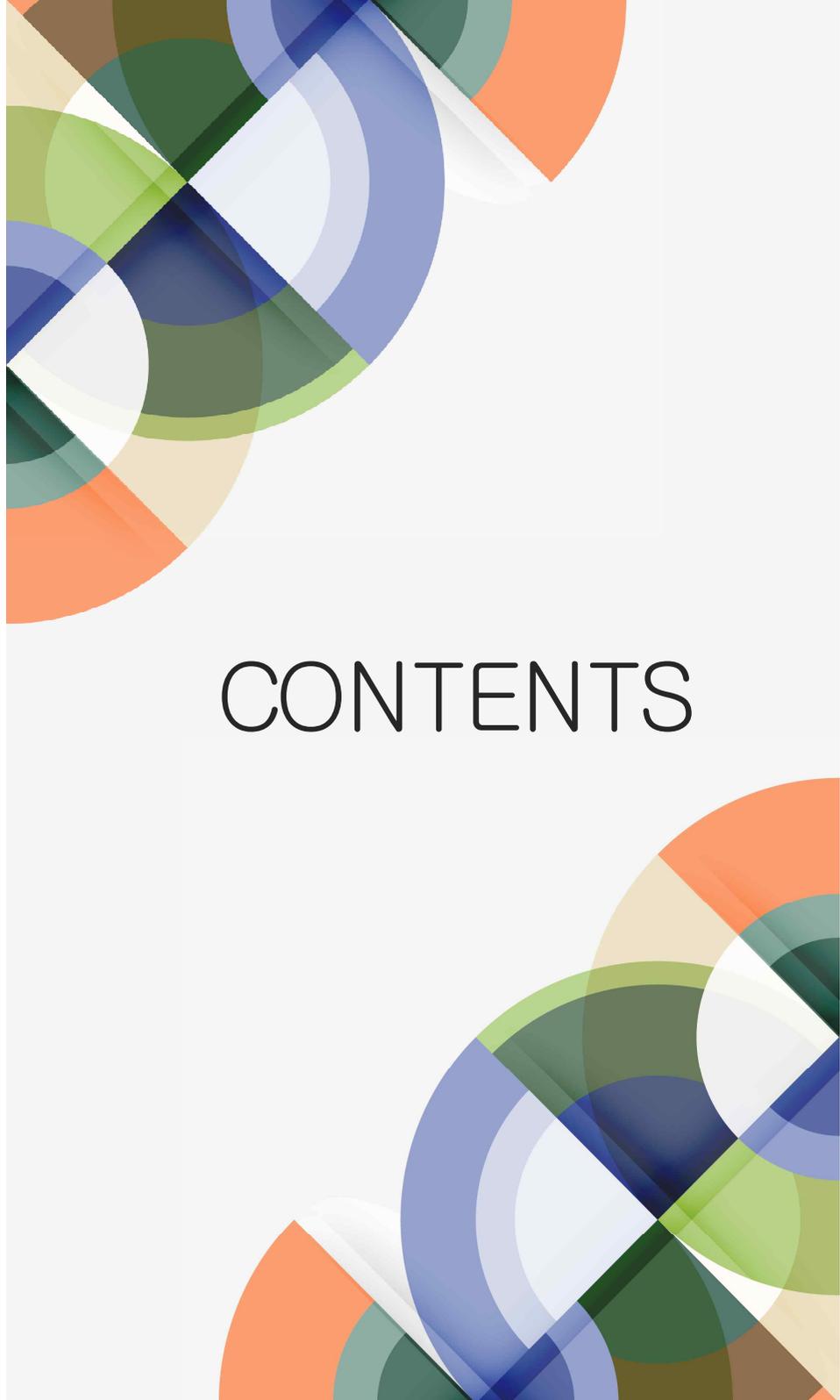


2024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 주요 개정사항 안내

중학교





CONTENTS

- 제4조 처리요령 3
- 제7조 인적·학적사항 6
- 제8조 출결상황 11
- 제16조의2 학교폭력 조치상황 관리 19
- 제13조 창의적 체험활동상황 21
- 제15조 교과학습발달상황 23
- 제15조의3 독서활동상황 28
- 제16조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 29
- 제19조 자료의 정정 30

제4조

처리요령

해설

중 p.28

사유

학교폭력 조치상황 관리 항목
신설에 따른 입력 주체 명시

신설

2024

항 목	입력주체
학교폭력 조치상황 관리	학급담임교사

※ 2024학년도 1학년부터 순차 적용

제4조

처리요령

해설

중 p.29

사유

정정주체 명료화

2023

나. 학교생활기록부 정정 시 학교생활기록부 정정대장 결재 절차에 따라 발견 학년도 담임교사가 정정처리를 하며, 졸업생의 경우 업무담당자가 정정한다.

2024

수정

나. 학교생활기록부 정정 시 학교생활기록부 정정대장 결재 절차에 따라 발견 학년도 담임교사가 정정처리를 하며, 졸업생 및 학업 중단 학생의 경우 업무담당자가 정정한다.

제4조

처리요령

해설

중 p.31

사유

학교폭력 조치상황 관리 신설에 따른 재취학·편입학 학생의 학교폭력 가해학생 조치사항 이기 절차 안내

신설

2024

너. 훈령 제477호(2024.3.1.) 이전 훈령의 적용을 받았던 학생이 재취학, 편입학 등의 사유로 ‘학교폭력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사항’을 옮겨 적어야 할 경우, 정정 절차를 거쳐 기존의 내용은 삭제하고 「학교폭력 조치상황 관리」에 입력해야 한다.

제7조

인적·학적 사항

해설

중 p.37

사유

면제처리 대상자 명확화

2023

- 3) 유예자가 외국에서 초등학교·중학교에 해당하는 학교교육과정을 마치거나 국내 초등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중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를 합격한 것으로 확인된 경우 ‘면제’로 처리할 수 있다.

2024

수정

- 3) 유예 또는 정원 외 학적관리된 학생이 외국에서 중학교에 해당하는 학교교육과정을 마치거나 국내 중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를 합격한 것으로 확인된 경우 ‘면제’로 처리할 수 있다.

제7조

인적·학적 사항

기재요령

중 p.41

사유

신입생 입학일 3월 1일자
반영에 따른 현행화

2024

삭제

라. 전출일과 전입일이 동일한 경우 당일은 전입일로 하고 전출일은 전입일 하루 전으로 처리한다.

~~※ 신입생의 경우 입학일에 전출·전입이 발생 시 전출일과 전입일을 동일한 날짜로 처리할 수 있으며 기재경로는 다음과 같다.~~

기재 경로

~~→ 전출교에서는 수업일수를 '1'로 등록하며, 전입교에서는 [학적] [전입관리] [이전출결자료등록]에서 수업일수에 '0'을 등록함.~~

~~→ 전출일에 실시한 전출교의 창의적 체험활동 누기기록은 등록하지 않음.~~

제7조

인적·학적 사항

기재요령

중 p.43

사유

유예 후 정원 외 학적관리와
장기결석에 따른 정원 외
학적관리 명료화

2023

바. 정원 외 학적관리 방법

- 1) 입학 이후 취학 의무를 유예받은 학생이나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학년도 수업일수의 **3분의 1 이상 장기결석한 학생**에 대해서는 학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정원 외로 학적을 관리할 수 있다.

※ 학년도 말에 결석이 시작되어 긴급처리가 된 경우 정원 외 학적 처리 산정 기준일은 다음 학년도 3월 1일임.

2024

수정

바. 정원 외 학적관리 방법

- 1) 입학 이후 취학 의무를 유예 받은 학생에 대해서는 학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정원 외로 학적을 관리할 수 있다.
- 2) 입학 이후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학년도 수업일수의 **3분의 1 이상 장기결석한 학생**에 대해서는 학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정원 외로 학적을 관리할 수 있다.

※ 학년도 말에 결석이 시작되어 긴급처리가 된 경우 정원 외 학적 처리 산정 기준일은 다음 학년도 3월 1일임.

제7조

인적·학적 사항

기재요령

중 p.44

사유

귀국학생 등의
학년 결정 방법 명료화

2023

사. 귀국학생 등의 학적 처리 방법

- 5) 외국인인 학생과 정당한 해외 출국으로 **면제 후** 국내학교에 재취학·편입학하고자 하는 학생은 외국학교의 재학기간과 교육과정 이수 내용을 근거로 학년을 결정하므로, 교과목별 이수인정평가를 실시하지 않는다.

2024

수정

사. 귀국학생 등의 학적 처리 방법

- 5) 외국인인 학생과 정당한 해외 출국으로 **면제된 학생이** 국내학교에 재취학·편입학하고자 할 때, 외국학교의 재학기간과 교육과정 이수 내용을 근거로 학년을 결정하는 경우에는 교과목별 이수인정평가를 실시하지 않는다.

제7조

인적·학적 사항

기재요령

중 p.49

사유

학생미혼모의 개인정보 보호

2024

신설

하. 학생미혼모의 위탁교육에 대한 학적 처리 방법

1) 학생미혼모의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을 교육정보시스템에서 등록 시 위탁교육 기관명이 드러나지 않도록 교육구분 설정을 '기타'로 하여 등록한다.

※ 2024학년도 이전의 내용은 '교육복지정책과-6434(2023.10.10.)' 공문을 근거로 정정할 수 있음.

※ 위탁교육기관의 활동 내용이 있는 경우, 해당 기관의 자료를 그대로 입력하되 학생미혼모의 위탁교육 기관명이 드러나지 않도록 봉사활동 실적의 '장소 또는 주관기관명'과 수상경력에 '수여기관'에는 위탁교육 기관명을 재적교로 입력함.

별표 8

출결상황 관리 등

현령

중 p.53

사유

질병 결석 시
제출서류 용어 정비

2023

2. 결석

다. 질병으로 인한 결석

- 1) 결석한 날부터 5일 이내에 의사의 진단서 또는 의견서(의사 소견서, 진료 확인서 등으로 병명, 진료기간 등이 기록된 증빙서류)를 첨부한 결석계를 제출하여 학교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

2024

수정

2. 결석

다. 질병으로 인한 결석

- 1) 결석한 날부터 5일 이내에 의사의 진단서 또는 의견서(병명, 진료기간 등이 기록된 의사 소견서, 진료 확인서 등의 증빙서류)를 첨부한 결석 신고서를 제출하여 학교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

별표 8

출결상황 관리 등

훈령

중 p.54

사유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2023.9.1.) 반영

2023

3. 지각·조퇴·결과

다. 결과: 수업시간의 일부 또는 전부에 불참하거나 교육활동을 고의적으로 방해한 경우

2024

수정

3. 지각·조퇴·결과

다. 결과: 수업시간의 일부 또는 전부에 불참한 경우

제8조

출결상황

해설

중 p.57

사유

특기사항에 입력할
사항 명료화

2023

바. '특기사항'란에는 질병·미인정 등으로 인한 장기결석, 기타결석의 사유 등을 입력한다.

※ 반복적인 지각·조퇴·결과의 경우 사유를 입력할 수 있음.

2024

수정

바. '특기사항'에는 질병·미인정으로 인한 장기결석, 기타결석의 사유 등을 입력한다.

※ **횟수가 많은 단기결석**·지각·조퇴·결과의 경우 사유를 입력할 수 있음.

제8조

출결상황

기재요령

중 p.64

사유

특기사항에 입력할
사항 명료화

2023

가. 특기사항에 입력하는 내용은 다음과 같다.

3) 단기결석: 횟수가 많을 경우 이를 누계하여 주된 사유를 입력할 수 있음.

4) 지각·조퇴·결과: 입력하지 않으나 **반복적인** 지각·조퇴·결과의 경우 사유를 입력할 수 있음.

※ 입력할 수 있는 **반복적인** 지각·조퇴·결과 횟수는 학교장이 정함.

2024

수정

가. 특기사항에 입력하는 내용은 다음과 같다.

3) 단기결석: 횟수가 많을 경우 이를 누계하여 주된 사유를 입력할 수 있음.

4) 지각·조퇴·결과: 입력하지 않으나 **횟수가 많은** 지각·조퇴·결과의 경우 사유를
입력할 수 있음.

※ 입력할 수 있는 **단기결석**·지각·조퇴·결과 횟수는 학교장이 정함.

제8조

출결상황

해설

중 p.59

사유

‘가정학습’이 포함되는 감염병
위기 경보 단계 범위 축소

2023

7) 교외체험학습 출결 처리

- 내용: 현장체험학습, 친인척 방문, 가족동반 여행, 고적 답사 및 향토행사 참여 등
 - 감염병 위기 경보 단계가 ‘심각, **경계**’ 단계인 경우에 한해 교외체험학습 승인(허가) 사유에 ‘가정학습’ 포함

2024

수정

7) 교외체험학습 출결 처리

- 내용: 현장체험학습, 친인척 방문, 가족동반 여행, 고적 답사 및 향토
행사 참여 등
 - 감염병 위기 경보 단계가 ‘**심각**’ 단계인 경우에 한해 교외체험학습 승인(허가)
사유에 ‘가정학습’ 포함

제8조

출결상황

기재요령

중 p.68

사유

학생선수 출결처리
방법 명료화

2023

2) 학생선수 출결처리에 따른 적용 방법

(나) 지각·조퇴·결과의 경우: 6시간(수업시간) 누적 시 1일로 간주

<예시> 학생선수가 조퇴 4시간, 결과 4시간, 지각 4시간을 한 경우 합산이 12시간이 되므로 2일로 간주하여 허용일수에서 2일 제외함.

2024

수정

2) 학생선수 출결처리에 따른 적용 방법

나) **대회 또는 훈련 참가로 인한** 지각·조퇴·결과의 경우: 6시간(수업시간) 누적 시 1일로 간주

<예시> 학생선수가 **대회 또는 훈련 참가로** 조퇴 4시간, 결과 4시간, 지각 4시간을 한 경우 합산이 12시간이 되므로 2일로 간주하여 허용일수에서 2일 제외함.

제8조

출결상황

기재요령

중 p.69~70

사유

학대 피해학생의
개인정보 보호

2024

수정 및 추가

6) 「아동복지법」 및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가정폭력 또는 아동 학대 예방을 위해 분리보호된 학생을 보호하는 경우 보호기간에 대해 위탁학생으로 관리한다.

※ 위탁교육기관의 활동 내용이 있는 경우, 해당 기관의 자료를 그대로 입력하되 학대 피해학생의 위탁교육 기관명이 드러나지 않도록 봉사활동 실적의 '장소 또는 주관기관명'과 수상경력에 '수여기관'에는 위탁교육 기관명을 재적교로 입력함('학대 피해학생 등교학습 지원 방안 개선(안) 시행 안내', 교육부 교육복지정책과-2613('23.4.10.) 참조).

제8조

출결상황

기재요령

중 p.70

사유

출석인정 결석 사유의
입력 여부 명확화

신설

2024

- 출석인정 결석은 특기사항에 사유를 입력하지 않음(단, 2~3학년의 경우 학교폭력 가해학생 조치사항은 입력함.).

제16조의2

학교폭력 조치상황 관리

훈령

중 p.76

사유

학교폭력 근절
종합대책(23.4.12.)에 따른
조치

신설

2024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에 따른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사항을 입력한다.

- ※ 2024학년도 초등학교 1학년, 중학교 1학년, 고등학교 1학년부터 순차적으로 적용
- ※ 2024학년도 초등학교 2~6학년, 중·고등학교 2~3학년은 기존대로 입력(제1·2·3·7호는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 제4·5·6호는 출결상황, 제8·9호는 인적·학적사항)

제16조의2

학교폭력 조치상황 관리

기재요령

중 p.81

사유

학교폭력 근절
종합대책(23.4.12.)에 따른
삭제시기 변경

2024

수정

가해학생 조치사항	삭제시기 (신고일 기준)		
	2024.3.1.이후	2023.3.1.~2024.2.29.	2023.2.28.이전
제1·2·3호	졸업과 동시	졸업과 동시	졸업과 동시
제4호	졸업일로부터 2년 후 ※ 졸업 직전 심의를 통해 졸업과 동시 삭제 가능	졸업일로부터 2년 후 ※ 졸업 직전 심의를 통해 졸업과 동시 삭제 가능	졸업일로부터 2년 후 ※ 졸업 직전 심의를 통해 졸업과 동시 삭제 가능
제5호			
제6호	졸업일로부터 4년 후 ※ 졸업 직전 심의를 통해 졸업과 동시 삭제 가능		
제7호	졸업일로부터 4년 후 ※ 졸업 직전 심의를 통해 졸업과 동시 삭제 가능	졸업일로부터 2년 후 ※ 졸업 직전 심의를 통해 졸업과 동시 삭제 가능	졸업과 동시
제8호	졸업일로부터 4년 후	졸업일로부터 2년 후	졸업일로부터 2년 후 ※ 졸업 직전 심의를 통해 졸업과 동시 삭제 가능
제9호	삭제 대상 아님	삭제 대상 아님	삭제 대상 아님

제13조

창의적 체험활동 상황

기재요령

중 p.99

사유

신입생 입학일 3월 1일자
반영에 따른 현행화 및
2개 학년에 걸친 재임기간
입력 방법 명시

2023

다. 자치활동 관련 특기사항에 입력하는 임원의 재임기간은 1학년은 입학일부터 학년 말, 2학년은 3월 1일부터 학년 말, 3학년은 3월 1일부터 졸업일까지로 입력한다.

수정

2024

다. 자치활동 관련 특기사항에 입력하는 임원의 재임기간은 1·2학년은 3월 1일부터 학년말, 3학년은 3월 1일부터 졸업일까지로 입력한다.

기재방법

- 재임 기간이 2개 학년에 걸쳐 있을 경우 해당 학년의 자율활동 영역에 나누어 임원 재임기간을 입력함.

제13조

창의적 체험활동 상황

기재요령

중 p.104

사유

실적 연계 사이트를 통한
봉사활동 실적 반영 시
유의사항 명시

2023

아. 실적 연계 사이트를 통한 봉사활동 실적 반영 시 다음 내용을 반드시 제외한 후 반영한다.

2024

수정

아. 실적 연계 사이트를 통한 봉사활동 실적 반영 시 다음 내용을 반드시 제외해야 하며,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의 유의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별표 9

교과학습 발달상황 평가 및 관리

해설

중 p.116

사유

서·논술형 평가만으로
평가가 가능하도록
시·도교육청의 역할 규정

추가

2024

5) 지필평가와 수행평가의 실시 비율, 서·논술형 문항 출제 비율 등 평가의 세부적인 사항은 시·도교육청의 ‘학업성적관리 시행지침’에 따라 학교의 ‘학업성적관리규정’으로 정하여 실시한다.

※ 단, 학생의 발달 특성 및 과목의 성격 등을 고려하여 지필평가는 서·논술형 문항만으로도 평가할 수 있음.

별표 9

교과학습 발달상황 평가 및 관리

해설

중 p.116~117

사유

지필평가 문항의 특징 및
수행평가 방법 참고자료 안내

추가

2024

나. 주요 용어 정리

- ※ 지필평가 문항 중 선택형 문항(진위형, 배합형, 선다형), 서답형 문항(완성형, 단답형, 서술형, 논술형)의 구분은 **중학교 학생평가 안내서(툭아보기)**」 자료 참고
- ※ 수행평가 과제 유형은 **중학교 학생평가 안내서(툭아보기)**」 자료 참고
(예) 서술·논술, 구술·발표, 토의·토론, 프로젝트, 실험·실습, 포트폴리오 등

별표 9

교과학습 발달상황 평가 및 관리

해설

중 p.117

사유

지필평가 기출문제 공개

2024

추가

다) 학년별·교과별 평가 계획은 학기 초에 학생 및 학부모에 공개하여야 하며, 평가 실시 전에 평가 방법 및 채점기준 등 평가 운영과 관련된 세부적인 사항을 학생에게 안내하여 학생들이 해당 평가의 평가 방법 및 평가 요소를 인지하도록 하여야 한다. 세부적인 채점기준을 모두 공개하기 어려운 경우, 채점기준에 포함된 평가 요소를 공개하도록 한다. 또한, 평가 계획이 변경되는 경우 학업성적관리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변경사항을 확정하고, 평가 실시 전에 변경사항을 학생과 학부모에게 안내하여야 한다.

※ 학교는 지필평가 기출문제를 공개하되, 공개범위와 방법은 학업성적관리위원회를 통해 학교장이 정함.

별표 9

교과학습 발달상황 평가 및 관리

해설

중 p.118

사유

과제형 수행평가 금지
범위 안내

추가

2024

자) 정규교육과정 외에 학생이 수행한 결과물에 대해 점수를 부여하는 과제형 수행평가는 실시하지 않는다.

※ 과제형 수행평가 금지에는 사전 준비가 필요한 암기식 수행평가 등이 포함됨을 유의하여야 함.

별표 9

교과학습 발달상황 평가 및 관리

해설

중 p.120

사유

위탁학생 성적 입력 방법
상세 안내

2024

추가

(1) 위탁학생이 위탁교(기관)에서 성적을 취득한 경우, 위탁교(기관)의 성적을 인정하고, 재적교 성적산출에 포함하지 않는다. 이 때, 위탁교(기관)에서 보내온 성적은 **동일(유사) 과목***으로 인정하여 입력한다. 다만, 성적(성취도, 원점수, 과목평균 등)이 산출되지 않은 과목은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에 문장으로 이수 내용만을 입력한다.

* 위탁교육기관에서 보내온 과목이 [학적-위탁학생관리-위탁학생관리-자료관리], ‘성적의 {과목추가}-과목찾기’에서 조회되지 않을 경우 ‘과목찾기의 과목명 목록’에서 유사한 과목으로 선택함.

제15조의3

독서활동 상황

기재요령

중 p.135

사유

독서교육종합지원시스템의
명칭 변경에 따른 현행화

2023

- 독서활동상황은 독서기록장, 독서 포트폴리오, 독서교육종합지원시스템의 증빙자료를 근거로 입력함.

2024

수정

- 독서활동상황은 독서기록장, 독서 포트폴리오, **독서로(구 독서교육종합지원시스템)**의 증빙자료를 근거로 입력함.

제16조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

해설

중 p.136

사유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의
입력 대상 명료화 및
관찰이 불가능한 경우의
기재 방법 안내

2023

가.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란에는 행동특성을 포함한 각 항목에 기록된 자료를 종합하여 학생을 총체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학급담임교사가 문장으로 입력하여 학생에 대한 일종의 추천서 또는 지도 자료가 되도록 작성한다.

2024

추가

가.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은 **모든 학생에 대해 입력하며** 행동특성을 포함한 각 항목에 기록된 자료를 종합하여 학생을 총체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학급담임교사가 문장으로 입력하여 학생에 대한 일종의 추천서 또는 지도 자료가 되도록 작성한다.

※ **학급담임교사가 직접 관찰이 불가능한 경우 그 사유를 입력할 수 있음.**

제19조

자료의 정정

해설

중 p.146

사유

학업 중단 학생의
학교생활기록부 정정 주체
명료화

신설

2024

나. 입력자(사용자)는 그 입력 내용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하며 잘못된 자료가 발견된 경우에는 자료입력 당시 사용자가 자료검사에 대한 책임을 가지며, 발견 학년도의 담임교사가 정정한다. 정정입력이 완료되면 입력 내용을 출력하여 그 출력물과 각종 보조자료의 내용과 대조·확인 작업을 실시하여 이상여부를 확인한다.

※ 학업 중단 학생의 학교생활기록부 정정은 업무담당자가 수행함.



교육부
Ministry of Education



한국교육과정평가원
Korea Institute for Curriculum and Evaluation